

『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2월 18일

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최 경 환

나. 제안이유

-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립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
-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 운영비 예산지원 사항 신설
- 도서관 위탁 운영시 지도감독 기능 신설
- 위탁시 시장 승인 없이 도서관 시설물의 원형변경 불가조항 신설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관 중 현

○ 본 조례안은

-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도서관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기존 제20조를 제25조로 하고, 안 제20조 내지 제24조를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(안 제20조)
- 도서관운영 위탁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(안 제21조)
-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, 시정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(안 제22조)
- 또한 수탁관리자가 협약위반이나 유지관리 소홀 등 관련규정 위반시는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(안 제23조)
-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임의변경 금지조항을 규정하였음 (안 제24조)

○ 검토결과

- 도서관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민간위탁 당위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결된 사안으로써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·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
- 재검토 사항으로는

조례 제·개정시는 내용의 중복됨이 없이 간결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나 본 조례 안 제20조제2항,제4항 및 안 제22조제2항은 같은 조 내에 항을 달리하면서 동일 조를 불필요하게 언급하였으므로,

⇒ 안 제20조의 본문내용중 제2항의 “제20조”와 제4항의 “제20조”를 삭제하고,

⇒ 안 제22조의 본문내용중 제2항의 “제22조”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